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03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8월 12일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영철,
김원태, 남창진, 박강산,
박수빈, 박승진, 박칠성,
서상열, 아이수루, 유정희,
이원형, 정준호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- 올해.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('24.1.)을 통해 시장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
- 이처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타 지자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조향을 마련하여, 다양한 주체별 협력에 기반한 시책 마련 근거 구축

2. 주요내용

- 가. 미세먼지 등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고자, 타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조향을 신설함 (안 제15조)
- 나. 기타 사항은 문맥상 자구 수정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지방자치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 중 “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의”를 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”
으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
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,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<u>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</u>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 ----- ----- ----- <u>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5조(협력체계 구축)</u> 시장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(협력체계 구축)에 “시장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”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